

정 관

2026. 01. 10. 제정

사단법인 한국대학축구연맹

사단법인 한국대학축구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대학축구연맹(약어 : 한국대학축구연맹)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UNIVERSITY FOOTBALL CONFEDERATION(약어 KUFC)이라 한다.
(이하 “연맹”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연맹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연맹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 또는 분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에 등록된 대학부 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학부 대회 운영과 팀의 관리 및 양성 등을 통해 연맹과 협회가 지향하는 축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구 경기 및 대회의 운영
 - 가. 연맹 가입 팀 간의 경기 및 대회
 - 나. 외국팀과의 경기 및 대회
 - 다. 기타 연맹 주관 경기 및 대회
 - 라. 연맹 선발팀 관리와 대회 참가
2. 홍보 사업
 - 가. 연맹 및 가입 팀 홍보
 - 나. 경기 및 대회 홍보
3. 축구 인프라 구축
 - 가. 선수, 지도자, 행정인력 등의 인적자원 양성 및 관리
 - 나. 축구 저변 확대 및 시설 확충
4. 연맹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관리

- 가.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 나.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국제 교류
5. 그 밖에 연맹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축구 관련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혜자)

- ① 연맹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② 연맹의 수익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선거운동의 금지)

- ① 연맹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② 연맹의 회원은 연맹 명의로 제1항과 같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자격)

- ① 연맹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단체)

‘회원단체’는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교)의 축구부로서 협회에 등록하고 연맹 가입이 승인된 팀을 말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연맹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총회에 참석하여 연맹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총회를 통해 연맹의 운영에 참여하고 연맹 활동 전반에 대해 알 권리
4.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5.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의 참가
6.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최, 주관 및 후원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와 연맹의 정관, 규정, 지시사항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4. 회원단체의 임원, 조직의 변동 시 보고

제12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입회, 탈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포상과 제명)

- ① 연맹의 회원으로서 연맹 발전의 기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연맹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2. 연맹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기존의 납부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연맹은 다음 각호의 선임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2인
 4. 부회장(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연맹은 다음 각호의 위촉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인 이하
 2. 고문 2인 이하
 3. 자문위원 4인 이하
 4. 분과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4년,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 ① 연맹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한다.

제1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 ③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 임원의 선임)

- ①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축구 활동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촉 임원은 필요 시 이사회나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③ 제21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 등 위촉 임원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명예회장과 고문에게는 급여, 수당 및 기타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민법 제777조에 따른 회장의 친족은 연맹의 선임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연맹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
 - 5. 제23조 제1호의 감사 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경우
 - 6. 연맹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나 부정, 부당행위로 선임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타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⑤ 해임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나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집행 종료로 간주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거나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⑥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맹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과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나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사고나 궐위된 때에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하지 않고 회장 선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5일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제26조 제3항의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참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 원격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는 비대면 총회로 심의·결의할 수 없다.

제2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3조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총회의 소집을 거부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이나 이사(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요청한 총회 소집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한 이사와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이나 의장에게 위임장 등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임장을 제출하는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안건의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제3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2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

제33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를 개최할 경우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② 연맹 사무처는 총회 의사록을 보관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회

제34조(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5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순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최통지일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 원격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2조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의결의 경우 비대면 이사회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거나 이사회 소집을 거부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권자에게 요청한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한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결의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연맹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8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③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0조(서면결의)

- ① 회장이 연맹의 사업을 운영할 때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에 참여하는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⑤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① 연맹은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부채납 등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은 의결을 거친다.(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 제외)
- ③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연맹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금) 연맹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각종 수수료
7. 수익금(사업 수익, 기부금, 후원금, 후보등록기탁금 등)
8. 기타

제44조(회계연도)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연맹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6조(예산, 결산의 보고)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와 총회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 재산목록표
4. 재산증감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4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의 공개)

① 연맹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4월 말까지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 및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하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처

제50조(업무)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1조(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제52조(사무처의 조직)

- ① 사무처는 사무처의 장이 관장하고, 사무처의 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 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처 직원은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내부 규정으로 인사를 관리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8장 분과위원회

제54조(구성과 조직)

- ①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기능, 운영사항을 정한다.
- ②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한시적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에 준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제9장 대한축구협회와의 관계

제55조(연맹의 권리)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협회 대의원총회에 회원을 파견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
- 2. 협회에 건의하거나 소청할 권리
-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제56조(연맹의 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다음 각목에 대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 가. 연맹 정관 개정
 - 나. 협회 정관 및 하위규정과 관련된 연맹의 세부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 다. 조직 변동 시
3. 연맹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연맹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당해 연도 수지예산, 기본재산 목록 등 총회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연맹 이사회 종료 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6. 선임 임원 변동 시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인준을 받을 의무
7. 직무 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 요청이 있을 시 자체로 심의·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8. 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선수 소집 일정을 준수할 의무
9. 국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

제10장 분쟁 조정

제57조(분쟁 조정)

- ① 각종 분쟁은 연맹과 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하여 연맹과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 ② 연맹은 회원단체와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체 분쟁 해결 후에도 동일하다.
- ③ 분쟁 발생 시 연맹은 협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며, 분쟁 조정과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58조(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해산)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연맹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6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연맹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연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개정 후 시행일)

본 정관 중 개정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주문관청의 허가, 협회의 승인을 얻어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